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1가단6387, 2021가단5183470(병합) 판결 [면책확인  
청구의 소 · 구상금]

---

## 전 문

원고A

(자사건 피고)

소송대리인 B

피고C

(자사건 원고)

변론 종결 2021. 10. 26.

판결 선고 2021. 11. 16.

## 주 문

1. 원고(자사건 피고)의 피고(자사건 원고)에 대한 대여금 12,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자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2021가단6387호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021가단5183470호 청구취지: 피고(자사건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자사건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21가단5183470호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계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총 3개의 구좌에 대한 변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1번으로 총 계금 30,600,000원을 받았는데 이후 18,000,000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2,6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입하였다.

|             |              |              |
|-------------|--------------|--------------|
| 시작일         | 2011. 9. 30. | 2012. 3. 20. |
| 만기일         | 2014. 2. 28. | 2014. 8. 20. |
| 총 불입 개월수    | 30개월         | 30개월         |
| 월 불입 금액     | 340,000원     | 340,000원     |
| 구좌수         | 2개           | 1개           |
| 총 납입해야 할 금액 | 20,400,000원  | 10,200,000원  |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로부터 원고가 대신 납입한 12,600,000원을 2016. 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민1342, 하단1342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1. 1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6. 12. 1.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20. 12.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자 사건 증거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본사건과 자사건을 함께 살펴본다.

###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도 고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과 맞지 않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건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5. 3. 2.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시 차용증(을 제1호증)을 1부만 작성하여 피고만 소지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권의 존재를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다. ③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금융기관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은 기재하면서 이 사건 개인 채무를 누락하였는데, 원고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남편 B이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대한 준비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용증 등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채권만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다. 소결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이 사건 채권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자사건(2021가단5183470호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진수